



법 제 사 법 위 원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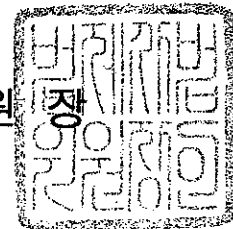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견제시 요청

우리 위원회에 계류중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976호)”의 심사와 관련하여 귀 기관(단체)의 의견제시를 요청하오니 2009년 12월 31일(목)까지 회신(법제사법위원회 이메일 law21@assembly.go.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끝.

법 제 사 법 위 원



수신자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한국공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참여연대 공동대표, 바른사회시민회의,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서기

이희석

입법조사관

김태규

수석전문위원

이호국

위원

김민호

협조자

입법조사관

김태규

전문위원

김민호

시행 법사위-3040 (2009. 12. 17)

우 150-70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법제사법위원회 <http://legislation.assembly.go.kr>

전화 788-2983

788-3500

/ law21@assembly.go.kr

/ 공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976
----------	------

발의연월일 : 2009. 12. 11.

발 의 자 : 이정현 · 유승민 · 김무성
이석현 · 김창수 · 진영
홍희덕 · 이성현 · 박선영
권영진 · 홍정욱 · 김금래
정병국 · 박근혜 · 김선동
의원(15인)

제안이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첨단 감청장비들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나 범죄와 무관한 사람들의 통신내용까지도 감시의 대상이 되는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음. 따라서 최근 이러한 포괄영장으로서 남용되고 있는 인터넷 회선 감청[패킷(packet)감청]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감청기간 및 그 연장횟수를 제한하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내용 등에 대한 폐기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무분별한 감청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의 허가서에는 전자우편의 내용, 접속한 인터넷홈페이지의 주소,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또는 대화방 등에서 게시한 의견, 검색한 정보목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도록 함(안 제6조제6항 후단 신설).

나.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단축하고 그 연장횟수를 제한함(안 제6조제7항 및 제7조제2항).

다.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통신제한조치로 알게 된 내용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7항 신설).

라.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 중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범죄수사·소추의 목적 등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폐기하도록 하고 그 경위 및 결과의 요지를 조서로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2조제2

항 · 제3항 및 제17조제2항제4호 신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2월”을 “1개월”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2월의 범위안에서”를 “1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두 차례만”으로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의 허가서에는 전자우편의 내용, 접속한 인터넷홈페이지의 주소,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또는 대화방 등에서 게시한 의견, 검색한 정보목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4월”을 “2개월”로, “4월의 범위 이내에서”를 “2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이 조,”를 “이 조,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가 제6조제1항·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

8조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통신제한조치로
알게 된 내용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
는 복사의 절차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사용제한”을 “사용제한과 폐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통신제
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
의 내용 중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 등이 포함
되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를 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폐기경위 및 폐기사실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 및 조서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4제2항 전단 중 “제6항”을 “제6항·제7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4.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제1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1
4조제2항에 따라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을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6條(犯罪搜查를 위한 通信制限措置의 許可節次) ① ~ ⑤ (생략) ⑥ 제5항의 허가서에는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그 목적·대상·범위·기간 및 집행장소와 방법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第6條(犯罪搜查를 위한 通信制限措置의 許可節次)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 <u>이 경우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의 허가서에는 전자우편의 내용, 접속한 인터넷홈페이지의 주소,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또는 대화방 등에서 게시한 의견, 검색한 정보목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u>
⑦ 通信制限措置의 기간은 2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第5條第1項의 許可要件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節次에 따라	⑦ -----1개월----- ----- ----- ----- ----- ----- -----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2월의 범
위안에서 通信制限措置期間의
연장을 請求할 수 있다.

⑧ (생략)

第7條(國家安保를 위한 通信制限
措置)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 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는 때에는 작전이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개
월의 범위에서 각각 두 차례만

⑧ (현행과 같음)

第7條(國家안보를 위한 通信制限
措置)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2개월 _____

2개월의 범위에서 각각 두 차례
만-----

③·④ (생 략)

第9條(通信制限措置의 執行) ①
(생 략)

②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
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는 통신기관등에
통신제한조치허가서(제7조제1
항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제
1항제1호·제3호에서 같다)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받
거나 이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
은 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 사
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 ⑥ (생 략)

<신 설>

③·④ (현행과 같음)

第9條(通信制限措置의 執行) ①
(현행과 같음)

② -----

-----이 조, 제1

2조제2항,-----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

가 제6조제1항·제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통신제한조치로 알게 된 내용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복사의 절차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第12條(통신制限措置로 취득한
資料의 사용제한) (생략)

<신설>

<신설>

第12條(통신制限措置로 취득한
資料의 사용제한과 폐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 중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를 한 검

<신 설>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 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 (생략)

② 제7조 내지 제9조 및 제9조의2제3항·제4항·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본다.

③ (생략)

제17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 설>

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폐기경위 및 폐기 사실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 및 조서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4(국가안보를 위한 통신 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6항·제7항-----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2조2항 또는 제3항(제13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4. (생 략)	<u>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용</u> <u>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u> <u>반하여 우편물 또는 그 내용</u> <u>과 전기통신의 내용을 폐기하</u> <u>지 아니하거나 그에 관한 조</u> <u>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람</u> 5. (현행 제4호와 같음)
-----------------	--